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회계감독팀장 김 선 문 (02-2100-2684)	<b>담 당 자</b>	차영호 사무관 (02-2100-2683) 허남혁 주무관 (02-2100-2687)
	금감원 회계조사국장 정 규 성 (02-3145-7290)		이현영 팀장 (02-3145-7308) 문정호 팀장 (02-3145-7301)
	공인회계사회 감리2본부장 한 진 희 (02-3149-0361)		조점호 감리위원 (02-3149-0353)

## 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. 2. 13일 제3차 회의에서,
  -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씨에스에이코스믹 등 4개사에 대하여, 과징금 부과,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,
  -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
  - ※ 비상장사인 (주)동림 및 (주)세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(위탁감리위원회)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既의결하였음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 변 인</b> prfsc@korea.kr	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(붙임)

**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**

(제3차 증권선물위원회, 2019.2.13. 의결)

(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참저축은행</p> <p>결산기 : 2015.6.30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상호저축은행업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(’15년 6월말 : 10,45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나,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장기연체상태 등인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② 미수수익 과대계상 (’15년 6월말 : 78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연체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에 대해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하나, 미수수익을 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증권발행제한 8월</li> <li>- 감사인지정 2년</li> <li>- 검찰 통보 (회사 및 前대표이사 1인)</li> </ul>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씨에스에이코스믹</p> <p>결산기 : 2013.12.31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업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허위 매출 계상 ('13년 4,57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2013.6.20. 최대주주인 (주)OOO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사의 거의 모든 사항을 원도급사인 (주)OOO이 수행하였음에도,</p> <p>회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4,574백만원의 허위매출 및 3,122백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징금 35.2백만원</li> <li>- 감사인지정 3년</li> <li>- 검찰 고발 (회사 및 前대표이사 1인)</li> <li>- 시정요구</li> </ul> <p>※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이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</p>

회 사 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씨에스에이코스믹	<p><b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b></p> <p>①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3년 4,574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매출계정에 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</li> </ul>	<p><b>대성삼경 회계법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%</li> <li>- (주)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: 1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주)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</li> <li>-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직무연수 12시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: 1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주)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</li> <li>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 상장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직무연수 8시간</li> </ul>

회 사 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동립</p> <p>결산기 : 2014.12.31. 2015.12.31. 2016.12.31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: 합성섬유 제조업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<b>[개별재무제표]</b></p> <p>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(’14년 6,073백만원, ’15년 6,243백만원, ’16년 6,243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회사는 2013.9월에 중국소재 종속기업을 합병하면서 추가로 취득한 동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이전대가(교부주식)를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가액과 상증세법상 금액으로 각각 잘못 측정하였고,</li> <li>-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지 아니하였으며,</li> <li>- 종속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을 그 원천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지 않는 등 지분법적용대상 종속기업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오류가 발생함</li> </ul> <p><b>[연결재무제표]</b></p> <p>① 연결회계처리 오류 (’14년 6,073백만원, ’15년 4,880백만원, ’16년 5,850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회사는 2013.9월에 중국소재 종속기업을 합병하면서 추가로 취득한 동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이전대가(교부주식)를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가액과 상증세법상 금액으로 각각 잘못 측정하였고,</li> <li>-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아니하거나(’14년과 ’15년), 계산오류(과대계상)가 발생하였으며(’16년),</li> <li>- 투자자본 상계제거 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포함된 오류금액을 영업권에서 잘못 차감하였고(’14년),</li> <li>-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각각 잘못 계상하는 등(’14년과 ’16년)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오류가 발생함</li> </ul>	<p><b>회 사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증권발행제한 4월</li> <li>- 감사인지정 2년</li> </ul>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세원</p> <p>결산기 : 2014.12.31. 2015.12.31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: 자동차 오일필터 제조·판매업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특수관계자거래(자금거래) 주식 미기재 (‘14년 9,060백만원, ‘15년 12,96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대해 기초·기말 잔액만을 공시하고 기중거래금액을 주식에 미기재한 사실이 있음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p>- 증권발행제한 1월</p> <p>- 감사인지정 1년</p>